

공동체성경읽기운영센터규정

5-1-78

규정번호 5-1-78
제정일자 2026년 2월 6일
최근개정
개정차수
관리부서 공동체성경읽기운영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내에 설치한 공동체성경읽기(Public Reading of Scripture)운영 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(이하 “G&M재단”라 한다.)과 협력하는 공동체성경읽기(이하 “PRS”라 한다) 운동 확산을 통한 명지전문대학의 기독교 정체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명지전문대학 학생 및 교직원 대상 PRS 운동 확산 추진
2. PRS 운동의 실행과 확산을 위한 리더 발굴 및 육성
3. 기타 성경 읽기 운동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및 Just Show Up북클럽(이하 “JSU북클럽”라 한다.)운영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센터는 명지전문대학 교목실 산하에 둔다.

② 센터에는 센터장, 부센터장,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교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센터장은 교목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본 센터에는 사무직원 및 행정 조교, 근로장학생을 약간 명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재정) ①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교비 또는 외부 지원금(G&M재단 지정지원금)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교비 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르며 외부 지원금은 별도의 외부지원금 운용지침을 따른다.

제5조(정기보고) 본 센터는 매 학기 종료 후 교비 및 외부지원금(G&M재단 지정지원금) 운용에 따라 학교와 G&M 재단에 사업종료 및 사업결과를 보고한다.

제6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7조(감사) 본 센터의 감사는 대학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